

지난해 특허출원 사상 최대치 기록하다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출원수가 전년도보다 17.4% 증가한 14만1백76건으로 지난 47년 2월에 국내 첫 특허출원을 실시한 이후 사상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1년에 10만4천8백40건을 기록했던 출원수는 2002년에 10만6천5백16건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2003년에는 대폭 늘어난 11만9천4백1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

는 이보다 약 2만건이 더 증가했다. 지난해 특허출원은 정보기술(IT)분야 대기업이 주도한 것이 특징이다. IT 분야 출원수가 전체의 5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5개 IT 기업이 전체 출원의 50%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데는 해당 분야의 국내외 업체간 특허분쟁과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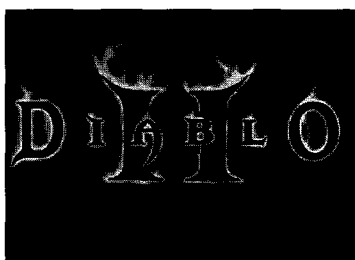
(R&D)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인 특허권 확보에 나섰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이 해외 각국에 출원한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WIPO에 따르면 역대 출원건수를 종합한 순위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이어 7위에 랭크됐다.

유명 PC게임 '디아블로' 상표등록 무효

미국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유명 PC 게임 '디아블로' 상표가 무효로 처리됐다.

국내 캐릭터 업체 리폼인터내셔널(대표 김영삼, 이하 리폼)은 지난 2003년 8월8일 청구한 디아블로 상표권 무효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이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아블로 상표 등록이 무효로 처리돼 국내 판매가 불투명하게 됐다. 앞서 디아블로 배급을 맡고 있던 비벤디유니버설게임즈(이하 비벤디)는 리폼이 등록한 '디아블(DIABLE)' 상표가 '디아블로(DIABLO)'와 혼동을 일으



상표등록 무효 처리로 곤혹스러워 하는 미국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유명 PC 게임 '디아블로'.

키는 유사상표라며, 제조 및 판촉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회사 쪽에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리폼은 디아블 캐릭터를 지난 '98년 4월 13일 출원해 '99년 4월 14일에 상표 등록을 완료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지난 2000년 9월 14일 등록된 디아블로보다 17개월이 앞선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리폼은 비벤디를 상대로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것. 비벤디는 당시 '디아블'이라는 문자가 등록된 것이 아니라,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형태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용 권한이 리폼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표장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리폼에서도 디아블로의 표장사용을 금지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특허법원에서 지난 1월 13일 디아블로의 상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항배가 주목된다.

가천의대·하버드대 인체 영상 특허 공유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와 미국 하버드대 뇌영상센터가 특허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차세대 의료 영상장비와 수술장비 매출에 대한 기술료 등을 두 대학이 반씩 나누게 된다. 가천의대 조장희 박사와 하버드대 페렌스 올레즈 박사는 지난 1월 17일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이에 관한 협정 조인식을 했다. 첨단의료 시스템 개발에 한·미 대학이 공동연구에 나서고, 특허 등 일체의 지적 재산을 공동 소유키

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 가천의대는 조장희 박사 주도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장치(PET)와 핵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MRI)의 영상을 통합하는 장비를, 하버드대는 이 두 장비를 이용한 첨단 수술시스템인 '아미고(AMIGO)'를 개발하고 있다. 조 박사팀의 장비는 연구용이며, 하버드대의 시스템은 수술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PET와 MRI는 암이나 치매 등 난치병 조기 진단과 영상화를 주도하고 있는 최첨단 의료 영상장비로 인체를 해부

하지 않고도 내부를 투시할 수 있으나 각각 장단점이 있어 통합 운용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두 대학의 첨단 의료 장비가 개발되면 치매, 뇌암 등 뇌 질환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 대한 세포 수준의 입체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정확한 발병 부위를 찾아 칼을 대지 않고 초음파로 암 조직을 떼어내거나 로봇을 이용해 수술하는 등 의료 혁신이 예상된다.

두 대학 연구팀은 앞으로 4~5년 안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 추진

'우리은행' 이름을 둘러싸고 상표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등 시중은행들은 우리은행이 보통명사인 '우리'라는 단어를 고유명사화해 독점 사용함에 따라 불만을 겪고 있다며 우리은행

의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새 상품을 설명할 때 예전에는 '우리은행의 상품 특징은 ○○○이다'라고 말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은행 명칭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서

불편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은행 명칭은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고문 변호사와 법적 검토 상황,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사 'KoLand' 상표 무단 사용 1억여 원 배상 판결

한국토지공사(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과거에 사용했던 상표 'KoLand'의 가치는 32억8천5백여만원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KoLand' 상표권자인 전모씨(52)가 KoLand 상표를 3년 7개월 간 무단으로 사용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백5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자는 원고인데 피고가 광고나 인터넷 주소에 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피고의 명성이나 신용에 편승해 소비자를 속인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피고는 '99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이 상표를 사용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매년 상표광고에 들인 누적비용이 광고효과와 비례한다고 보는 '비용접근법'을 적용, 이 상표에 축적된 광고효과의 10%를 상표가치로 판단해 상표가치를 '99년 16억원, 2000년 19억원, 2001년 25억원, 2002년 28억원, 2003년 32억8천만원으로 보고 상표가치의 6%를 상표 사용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 '옴천 토하젯' 상표 주인은 누구?

'옴천 토하젯'의 상표권을 두고 생산업자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강진군 옴천면은 최근 컴퓨터 80여 대를 들여와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고 생산업자 10여명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도록 상표 일원화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옴천 토하젯'과 '청자골 토하젯'의 상표권자 2명이 지명 사용을 두고 다투고 있는 것. '청자골 토하젯' 상표권자인 옴천면 김(56·옴천면)씨는 '옴천 토하젯'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씨는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옴천 토하젯은 수백년 동안 지역의 특산품이다'라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이름을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3년 옴천 토하젯으로 상표 등록한 이 마을 조(65)씨는 지난 달 중순 '김씨 등 3명이 무단으로 옴천 토하젯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며 이들을 상표도용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는 지난 2004년 12월 옴천 면사무소 주관으로 상표권 일원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자 맞고소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들이 집에서 조금씩 담아 팔아오던 것이 옴천 토하젯이다'라며 '업자들이 옴천이라는 지명과 상표 이름을 서로 선점하려고 해서 안된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지 / 면 / 안 / 내

- 2 지난해 특허출원 사상 최대치 기록하다
- 3 특허청, 디지털 디자인 보호 본격화
- 4 창의력의 축제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 5 LG전자, 파나소닉코리아 PDP 특허침해 소송
- 6 삼성, 연속동작 인식폰 세계 첫 개발
- 9 인물 FOCUS·김무영(주)젠셀·김무영 헤어월드 대표
- 10 선부중학교 발명공작교실
- 13 IBM, 특허권 5백건 무료공개 결정
- 14 국내 대학들, 인터넷 지적재산권 관리에 극도 취약